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2790 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1) 2020. 5.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시는 해당 부과처분 관련 원고의 납부일로 보여 이를 피고가 제출한 2020. 7. 13.자 참고서면 내용에 따라 각 부과처분의 고지일로 정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9

가. 원고는 2015년 4월경 [redacted]구 B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9. 2. 13. 이 사건 토지의 2019. 1. 1. 기준 공시지가를 ㎡당 6,1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관련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0. 6.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주거용과 상가용으로 구별되지 않고, 동일하게 ㎡당 6,100,000원으로 결정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처분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4. 29. '제대로 된 감정평가도 없이 위법한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판단(직권)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제1항의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9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를 취하하고 새로운 소를 제기하거나, 기존 청구에 더하여 추가로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등 참조). 다만, 변경 후의 청구가 변경 전의 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변경 전의 청구에 이미 변경 후의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핌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7. 13.부터 2019. 9. 10.까지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29.에 이르러서야 구 지방세기본법상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2)]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가 변경 전 청구인 이 사건 결정의 취소청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거나, 이 사건 결정의 취소청구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는 당초 원고의 소 제기 시점인 2019. 10. 6.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이

2) 참고로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뒤, 변경된 청구취지의 처분일 및 세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20. 5. 22. 다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9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 변경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시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보더라도 최초 청구취지 변경시점인 2020. 4. 29.이 되어야 하므로, 결국 변경된 이 사건 소 전체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9

[별지1]

- 부과처분 내역 -

구분	고지일 (송달일) (납부일)	개별 세목	세액(단위: 원)
2017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관련	2017. 7. 10. (2017. 7. 13.) (2017. 7. 25.)	재산세(건축물)	125,490
		도시지역분	70,270
		지역자원시설세	115,040
		지방교육세	25,090
		합계	335,890
2017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관련	2017. 9. 10. (2017. 9. 14.) (2017. 9. 21.)	재산세(토지)	492,790
		도시지역분	323,300
		지방교육세	98,550
		합계	914,640
2018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관련	2018. 7. 10. (2018. 7. 13.) (2018. 7. 25.)	재산세(건축물)	128,290
		도시지역분	71,840
		지역자원시설세	117,730
		지방교육세	25,650
		합계	343,510
2018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관련	2018. 9. 10. (2018. 9. 14.) (2018. 9. 24.)	재산세(토지)	539,890
		도시지역분	345,280
		지방교육세	107,970
		합계	993,140
2019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관련	2019. 7. 10. (2019. 7. 12.) (2019. 7. 24.)	재산세(건축물)	131,090
		도시지역분	73,410
		지역자원시설세	74,880
		지방교육세	26,210
		합계	305,590
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관련	2019. 9. 10. (2019. 9. 10.) (2019. 9. 26.)	재산세(토지)	645,200
		도시지역분	394,420
		지방교육세	129,040
		합계	1,168,6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9

[별지2]

관계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9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9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끝.